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6.03.01.
개정 2017.03.0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 학칙 제55조에 의거 본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본교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, 교수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2. 교수자 수업 질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
3. 기타 교육 및 연구사업,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, 소속 교수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8인 이내로 구성하되, 본 대학 교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업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 자문

②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

③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4조(운영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수행한다.

① 교원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무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